

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13호

「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기존에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여성에 편중되어 성별 인식
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확대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등 주
요 기능이 훼손되었으며, 또한 다수의 유사시설에서 양성
평등 교육이 중복되고 있어 센터 운영의 필요성 및 효율성
이 사라짐에 따라, 이에 2024년 6월 30일로 위탁사무가
종료되었음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□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중복사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사무를 여성가족재단으로

이관함에 따라 성평등지원센터에 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